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1월 13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19.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영등포구장학재단

- 사업내용

-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육성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

-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소요예산)

- 범 위: 기본재산적립, 인재육성 장학금, 인건비, 운영비

- 출연금액: 503,446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장학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170
----------	-----

제출년월일 : 2019.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대상 : (재)영등포구장학재단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다. 사업내용

-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육성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

라. 출연 필요성

- 구 출연금(5억)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기부수입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고 목적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기본재산 증자에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자원만으로는 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구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영등포구장학재단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등포구 인재발굴 양성과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마.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소요예산)

- 범 위 : 기본재산적립, 인재육성 장학금, 인건비, 운영비
- 출연금액 : 503,446천원

※ 2020년도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3.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